

교수창업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을 증진하고 창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이라 함은 교수가 연구·개발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을 설립(기업 경영 및 예비활동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수’ 라 함은 본교에 소속한 전임교원을 말한다.
3. ‘겸직’ 이라 함은 교수가 창업과 관련하여 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수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창업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교수의 창업 활동은 교육, 연구 등 교수 본연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2장 창업 신청 및 승인

제4조(창업자격) 이 규정에 따라 창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 소속된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5조(창업신청) 창업을 하고자 하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수창업 신청서 [별지1호]
2. 사업계획서
3. 기타 창업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창업심사)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② 창업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창업심사를 통과한 교수의 겸직을 교무처에 추천한다.

제7조(창업교수의 겸직) ① 창업심사를 통과한 자는 반드시 교무처 교무팀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창업교수의 겸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이 종료되는 교수가 연장을 원할 경우,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통하여 3년 단위로 겸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

③ 기타 겸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원 겸직 허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8조(창업승인 취소) 창업을 승인받은 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정 제9조에 의한 협약을 소정의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규정 제10조에 의한 기업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지 않는 경우
3. 규정 제15조에 의한 재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4. 창업신청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5. 창업성도가 미미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6. 창업활동을 통해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학생을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
8. 기타 승인된 사항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이 규정에 따라 창업을 승인받고 겸직한 교수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사항 및 재정적 기여 등에 관하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창업 교수의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체결이 지연될 때에는 협약체결 마감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산학협력단에 통보해야 한다. 단, 협약 체결일은 협약체결 마감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기업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① 창업교수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 창업교수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절차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변경 신고 및 보고) ①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② 창업교수는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기업의 결산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창업 지원

제12조(경영 지원 및 연수) 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자원을 활용하여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사용) ① 창업교수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대학 시설물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산정 및 징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창업 교수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 제반 비용 및 관련 절차는 창업보육센터 관련규정에 따른

다.

- ③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④ 창업교수 및 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학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⑤ 대학은 창업교수에게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권) 이 규정에 따라 창업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용에 관한 권리는 「서울여자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장 재정적 기여

제15조(재정적 기여) 창업교수는 본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주식 일부를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

제16조(주식 무상증여) ① 무상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당해주식의 주당 가치 산정은 액면가, 자본금은 당해기업 발전기금 산정시점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창업 승인일로부터 2년 경과시점에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단, 교수창업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세신고 소득금액의 6% 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을 타인에게 영업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이 5억원까지는 양도금액의 2%,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④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이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병대가(합병법인의 교부주식 또는 현금 등의 합병교부금)의 종류별로 각각 2%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⑤ 창업교수는 동조 제2항에 의한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무상증여분에 대한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주권을 인도해야 한다. 단, 당해기업이 주권 미발행기업인 경우에는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주식 무상증여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무상증여를 면제할 수 있다.

1. 창업교수가 창업 승인일로부터 2년 이전에 당해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제16조 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전에 무상증여한 경우
3. 총장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업의 주식 무상증여 면제를 결정한 경우

제18조(기술이전의 실시) ① 창업교수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매 1년마다 기술이전을 통해 학교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 단, 창업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이전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 해당 기술의 가격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5장 기타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창업을 한 교수는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인을 받고 제9조에 의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사업자등록 후 만 7년이 경과한 기업은 협약체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